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2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0.

발 의 자:인재근・양경숙・문진석

남인순 · 주철현 · 고영인

최종윤 • 이장섭 • 서영석

노웅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.

따라서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 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,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,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101조).

법률 제 호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조제2항제1호 중 "제3조·제40조제1항 및 제3항(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41조제1항 및 제5항(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"을 "제3조 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- 5의2.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
- 1의2. 제40조제1항 및 제3항(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을 위반한 자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41조제1항 및 제5항(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자

- 2.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
- 3.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
- 4.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1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10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<u>제3조·제40조제1항 및 제3</u>	1. <u>제3조 또는</u>
항(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	
를 포함한다), 제41조제1항	
및 제5항(제88조에서 준용하	
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	
86조제1항을 위반한 자	
1의2. ~ 3. (생 략)	1의2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	<u><</u> 삭 제>
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	
보고를 한 자	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의2.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
	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
	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7.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	<u><삭 제></u>
육을 받지 아니한 자	
8. ~ 10. (생 략)	8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3
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- 2.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
 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
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
 지키지 아니한 자
- 3.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

 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

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

4. • 5. (생략)

<신 설>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40조제1항 및 제3항(제 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)을 위반한 자

<삭 제>

<u><삭</u>제>
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41조제1항 및 제5항(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자
- 2.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한 자
- 3.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

④ 제1항부터 <u>제3항</u>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지키지 아니한 자
4.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
육을 받지 아니한 자
<u> </u>